더 큰 도약! 살맛나는 당진!

청렴韓세상

- 2018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자체종합감사 -

감사 결과 처분 내용

2018. 6.

당 진 시

(감사법무담당관)

1 초과근무명령 및 정산 부적정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5조(보수에 관한 규정) 및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0조(수당의 지급)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(시간외근무수당)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○ 또한, 「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·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, 초과근무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 업무 내용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를 초과근무의 명령권자(각 부서장)가 결재함으로써 이루어지며, 초과근무 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.

○ 또한 우리시의 초과근무 명령은 비상 상황,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.(자치행정과-11887(2016. 4. 26)호)

○ 따라서, 초과근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, 비상상황, 재해 등으로 부득이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사후에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등록한 후 정산 처리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다.

[표1]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내역 : 생략

【 처 분 요 구 】

사후결재 대상인 초과근무 내역을 사후에 사전신청 등록한 후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**,*원을 회수 조치하고,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.**

2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처리 소홀

○ 「당진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,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「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하여야 하며, 회계 관리의 엄정성과 직무상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관과 지출원은 겸직할 수 없다.

○ 이에 따라 당진항 서부두관리사업소에서는 재무관 및 지출원 휴가 시 회계 공무원 관직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(재무관 연가) 직무 대리자 지정 내부결제(20**. *. **)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.

○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「당진시 재무회계 규칙」 및 「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을 위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.

【표】 회계 관계 공무원 없이 지출 업무 처리 사례 : 생략

【 처 분 요 구 】

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.

3 용역사업비 집행 시 회계 처리 소홀

○ 「당진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55조(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) 제4항에 의하면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"별표2"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(별지 제50호 서식)에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,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 정리는 계약 체결 시로 규정되어 있다.

○ 또한, 동 규칙 제128조(회계문서의 날인)제1항에서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, 서명 그 밖에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. 다만, 강의, 감시,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,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○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및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.

○ 그럼에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에서는 당진항지원센터 ○○○○○○ 유지관리 용역, 당진항지원센터 ▼▼▼▼▼▼ 대행 용역, 당진항지원센터 ◍◍◍◍ 용역, 당진항지원센터 ◇◇◇ 유지보수 용역, 당진항지원센터 ●●●● 및 ▣▣▣▣ 용역에 대해 계약 체결 시 전체계약금액에 대해 원인행위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*월 11일과 *월 24일로 나누어 원인행위를 확정하였고,

○ 위 5개 용역 및 당진항지원센터 ◎◎용역에 대한 *회 내지 **회에 걸친 기성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의 서류가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결의서에 회계 관계 공무원의 날인도 없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.

【표1】 용역사업비 지출원인행위 및 집행내역 : 생략

【 처 분 요 구 】

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.